

## 노회록검사위원회 시행세칙

---

###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노회록검사위원회 규정 안에서 노회록 검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2조 (노회록 작성)

1. 노회 회기 표기와 구분은 아래와 같다.
  - 1) 정기노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〇〇〇 노회 제〇〇회 정기노회 회의록
  - 2) 임시노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〇〇〇 노회 제〇〇회 〇〇차 임시노회 회의록
  - 3) 노회 회기는 개최하여 폐회 시까지로 한다.
  - 4) 긴급노회는 임시노회에 해당한다.
2. 회원명부는 정회원부터 기록하고, 회원명단에 소속교회, 주소를 기재한다.
3. 모든 이름 앞 또는 뒤에 직분을 넣어 기록한다.
4. 모든 명칭은 헌법과 교회 행정서식에 준한다.
5. 교회 용어는 총회 권장용어[제94회 총회 회의록(2009년) 169쪽~172쪽]를 사용한다.
6. 성경구절을 기록할 경우 성경은 약어를 표기하지 말고 전체 명칭을 기록한다.
7. 외국어 표기는 한국 명칭을 쓰고 괄호 안에 외국어 명칭을 기록한다. 단, 한국어로 표기할 수 없는 명칭은 외국어로 쓸 수 있다.
8. 총회 수의 안건은 반드시 투표해야 하고, 제목과 내용, 표결사항(찬성, 반대, 무효)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수의 안건의 분량이 많을 경우 첨부할 수 있다.
9. 현의안건 기록은 보고 내용(제안설명)을 이어서 기록한다.
10. 현의와 청원 건을 기록할 때에는 정치서식에 준하여 제출자 명의로 기록한다.
11. 결의사항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결의한 여부를 확인한다.
12. 회의 결의나 보고내용을 별첨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별첨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별첨자료를 반드시 첨부한다.
13.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적색 중선을 긋고 날인하며, 몇 자 정정했음을 기록한다.

14. 타 노회에서 이명은 '○○노회장 ○○○목사가 ○○○목사를 본 노회로 이명 청원의 건'이라 기록한다.
15. 답입(전도)목사 청빙은 청빙서 서식에 따라 '○○노회 목사 ○○○씨'로 기록한다.
16. 전도목사 계속 시무 관련 절차와 회의록은 『헌법』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2.와 「정치리치총람집」2.목사 1)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3)전도목사 [5]에 따라 '전도목사 계속 시무 보고'가 아니라 '전도목사 계속 시무 청원'이므로 대리당회장이 청원하여 처리하고 기록한다.
17. 부목사 계속시무보고의 건은 처음 청빙 때는 허락이고, 1년 후 계속 시무는 '반대로 기록한다.  
(『헌법』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4.부목사)
18. 폐회 시 '~의 기도로'라고 표기하지 않고, '~의 기도 후'로 기록한다.
19. 모든 회의 끝에는 ○년, ○월, ○일, ○시간을 기록하고, 회장과 서기가 반드시 서명 날인한다.
20. 서명 날인은 반드시 폐회예배 후에 한다.

### 제3조 (노회록 검사)

1. 노회 서기는 노회록 검사를 위해 가편집본(스프링제본) 1권을 제출한다.
2. 1차 노회록 검사는 반드시 노회 서기가 직접 참여하여 받는다.
3. 1차 노회록 검사를 받고 수정 보완사항을 수정한 노회는 전자문서형식(PDF)으로 노회록을 제출하고, 해당 검사위원이 2차 노회록 검사를 실시한다.

### 제4조 (노회록 제작)

1. 노회록에 쪽 수를 기록하되, 양면 인쇄할 경우 오른쪽을 홀수 쪽으로 한다.
2. 노회록 크기는 A4로 통일한다.(권장사항)
3. 노회록이 단행본(회기별로 나뉜 책)일 경우에는 일시 장소를 겉표지에 기입하고, 합본(여러 회기를 한권으로 묶은 책)일 경우에는 각 회기마다 표지(색으로 구분)를 붙여서 일시와 장소를 기입한다.(권장사항)
4. 회의록과 보고서가 분리되어 기록되었을 경우에는 별첨을 표시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권장사항)
5. 노회록은 영구보관용이므로 최종 완결된 노회록은 하드커버로 제작하여 2권을 제출한다.

6. 제출한 하드커버 제작본은 위원회가 검사필하여 1부는 총회 역사자료관 보관용으로 보관하고, 1부는 노회보관용으로 노회에 송부한다.

#### **제5조 (개정)**

이 시행세칙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